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108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173,956원 및 그 중 11,380,779원에 대하여 202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9. 10. 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407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7. 4. 13. 피고 B에게 17,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5.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20. 2.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은 2021. 1. 22. 기준으로 원금 11,380,77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93,177원 합계 15,173,956원이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9. 10.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0.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0. 28. 접수 제407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차용금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5,173,956원 및 그 중 원금 11,380,779원에 대하여 202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채무자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당진시 전 909㎡ 중 1/2 지분
2. 충청남도 당진시 전 1326㎡ 중 2/13 지분
3. 충청남도 당진시 전 1402㎡ 중 1/2 지분
4. 충청남도 당진시 전 235㎡ 중 1/2 지분 끝.

